

06 상수도행정 및 조직관리

서울상수도가 창설된 지 100년간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서울상수도의 인력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각 시대에 맞게 인력과 조직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서울상수도의 선택은 탁월했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업무처리의 개선과 효율성의 증대 및 각종 경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서울상수도는 특수공기업으로 그 운영면에 있어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의 독립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 서울상수도의 일반행정 운영은 담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영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가 바람직한 것이므로 서울상수도는 1964년부터 기존 관청회계 방식에서 벗어나 공영기업으로서의 조직과 회계제도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이후 상수도행정의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대민서비스를 통해 조직의 대외 신뢰도는 향상되었고 내부의 재정적 기반과 조직의 유연성은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70년 이후 계속된 중단기 시설확장 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꾸준한 미래 전망의 제시와 충실한 조직관리가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출범 후 일반기업의 조직관리와 마찬가지로 잠재인력의 육성을 통한 전략적 인재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상수도는 전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상시 교육체제의 정립과 교육 부문의 투자를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 7월에는 교육홍보과를 신설해 내부 인력의 교육 분야를 담당할 독립부서를 출범시켰다. 특히 JOB 로테이션의 체계화를 통한 경력개발제도를 연구 중에 있어 선진적 인력 및 조직관리를 현실화하고 있다.



1장

수도관련법제와 급수제도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관리나 송배급수에 관련한 사항 등 다양한 법제가 필요하다. 최초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대한제국기에도 칙령 등의 법제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상수도 사업에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수도조례는 시대별로 소비자들의 편의와 급수의 선진화 및 합리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인간생활의 역사에 있어 물은 중요한 존재이다. 근대적 상수도가 도입되기 이전 인간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계곡의 물이나 강물 등을 그대로 음용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이 생활의 윤택함과 풍요로움 및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산업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산업사회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어 감에 따라 자연환경은 상대적으로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준 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위적인 힘을 가해 오염된 물을 정화(淨化)하고, 정화된 물을 관(管)이나 기타 시설물을 이용해 각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을 생산·공급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었음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건설이나 물의 정화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개인이 사용한 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인간사회의 근대화와 병행해 나타난 수도는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으며, 수돗물의 공급에 따르는 제도적장치의 변화와 함께 공급방식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천과 나란히 발달하여 왔다.

서울의 경우 근대적 상수도시설이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절 외국인들에 의해서였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수도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시설의 부설권과 경영권을 따내 서울상수도의 역사가 시작된 1903년 12월 9일 이후로 대한제국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부산·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상수도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를 제정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갔다.

1절 근대적 상수도 도입 이전의 급수제도

근대적 상수도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편리를 위해 계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설

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외국 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근대사회에는 상수도 시설에 따르는 급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상수도시설이 구비되어 급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급수에 따르는 제도적 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상수도의 도입 이전 우리나라에서의 용수(用水)는 주로 우물과 계곡 및 하천의 물을 저수해 이용하였다. 그 중 우물의 사용



일제강점기 한강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은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형성되자 용이하게 물을 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인 태종 15년(1415년), 매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도성안의 물이 부족하게 되자 왕명으로 다섯 가구마다 하나의 공동우물을 파서 식수로 충당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동우물 이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가에서는 집안에 우물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사회의 물 공급은 우물의 축조와 저수지 건설 및 자연적인 약수 등에 의존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규제나 원칙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항 이후 내륙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이른바 ‘물장수’라고 불린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길드(Guild)인 수상조합(水商組合)까지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급수권(給水權)을 관리하였으며, 나름의 공인된 제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인된 제도의 규칙은 기록으로 찾아 볼 수 없다.

이후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이 도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항을 계기로 인구가 집중된 부산과 인천, 목포 같은 항구도시에서 음용수로 취할 수 있는 물의 부존량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1879년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되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 상수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2절 도입기 및 일제강점기의 수도법규와 급수제도

1903년 12월 9일,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상수도부설 경영의 특허를 받아 공식적인 근대적 상수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5년 8월 영국회사인 대한수도회사(The Korean Water Works Co.)가 상수도부설 및 경영권을 사들여 1906년 8월초 뚝도정수장(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제1정수장)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1908년 9월 1일 역사적인 통수

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대한수도회사는, 기존의 물을 공급하고 있던 물장수와와의 갈등을 피하고 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서울시내에 220전(桮)의 공용수도를 설치해 물장수들이 이를 각 가정에 배달하고 물의 사용료를 받아 회사에 납부하게 한 것이다. 즉, 수도 운영의 정당성도 갖고 수상조합과의 마찰도 없앤 것이다.

한편, 최초의 수도관련 법규는 1906년 4월 25일자 고종황제의 칙령(勅令) 제21호로 발효된 ‘수도국관제(水道局官制)’로 탁지부(度支部) 내에 수도국을 설치, 수도시설과 급수 및 요금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는 수도공사소(水道工事所)는 수도국장의 지휘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같은 해 6월 21일에는 수도국에, 공사비의 예결산 및 유지비, 급수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사경리소(工事經理所)와, 수도공사(水道工事)의 서무회계와 설계실시 및 감독과 같은 공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공사출장소(工事出張所)를 둔다는 내용의 ‘수도국분장규정(水道局分掌規程)’을 공포하였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탈한 이후 1911년 1월 24일, 서울상수도는 일본의 ‘시부자와 신디케이트(澁澤財閥)’가 매수해 잠시 운영하였다. 그러나 곧 조선총독부에서 다시 인수하여, 경기도고시(京畿道告示)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해 4월 1일부터 수도경영권이 경기도장관에게 이양되었고 이때부터 공공경영(公共經營)을 하게 되었다. 1922년에 그 경영권이 경성부(京城府)에 위양(委讓)될 때까지 서울상수도는 경기도의 관리 하에 있었다.

한편, 1910년 9월 29일자로 통감부령(統監府令) 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水道上水保護規則)에 의해 수도상수보호구역 내에서 오물 투기 및 수영, 세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가옥 건조 또는 전답 개간 등으로 인한 토지의 형상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한 달 뒤인 10월 28일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령(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 제10호 수도상수보호구역을 ‘경기도 과천시 하북면 하가차산리부터 흑석리와 그 대안(對岸)에 이르는 한강 본류 및 양 연안’으로 규정하였다.



서울상수도 초창기 한강에 취수관을 매설하는 모습

1914년 일제는 수상조합의 물 사용료 수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물장수에 의한 급수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수상조합을 폐지하였다. 일제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위생을 진심으로 걱정해 내린 조치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수도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편리성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이다. 이로 인해 수도 사용자는 공용수도에 직접 가서 물표와 바뀐 물을 공급 받아야만 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상수도시설은 여전히 부실하였고, 갖추어진 시설마저도 일본인 거주지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물장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물장수들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 1월 29일에는 칙령(勅令) 제8호로 관영(官營)수도급수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금액징수(金額徵收)는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5일에는 위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내부령(內部令) 제6호로 공시하였다.

서울상수도의 경영과 운영이 제도적인 정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에서 경영권이 경성부로 넘어오면서부터이다. 즉 1922년 3월 31일, 경성부조례(京城府條例) 제12호로 ‘경성부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수도급수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 조례는 이후 1922년 7월 1일(조례 제16호), 1922년 11월 30일(조례 제19호), 1924년 7월 28일(조례 제12호), 1928년 5월 10일(조례 제7호), 1932년 7월 6일(조례 제7호) 등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32년 7월 6일 경성부수도급수조례 제7호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급수제도를 일별해 보면, 우선 당시의 경성부 급수에 관한 허가권 및 급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나 이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의 관리 등의 권한을 경성부윤(京城府尹)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급수종별은 모두 4종으로, 소화용(消火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수기(量水器)를 이용해 급수된 양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수기를 이용하여 급수의 양을 측정하기 시작한 때는 1924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이른바 방임급수방식(放任給水方式)을 사용하였다.

이후 1932년 5월 11일자 조례 제5호 ‘경성부수도개량 및 확장준비금적립조례’, 1934년 10월 30일자 고시(告示) 제146호 ‘경성부수도과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담당구역의 건’, 1934년 10월 30일자 훈령(訓令) 제9호 ‘경성부수도과사업소처무규정’, 1935년 7월 22일자 고시 제134호 ‘경성부임시상수도확장조사위원회규정’ 및 1936년 4월 1일자 내훈(內訓) 제3호 ‘경성부수도사무외근원근무지침(京城府水道事務外勤員服務心得)’ 등의 법제가 마련되었다.

경성부가 1938년도에 발간한 <경성부상수도개요>의 통계표에 나타난 급수 업종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13년 당시의 급수종별구분은 제1종 영업용, 제2종 가사용, 제3종 사설공용(私設共用), 제4종 공설공용(公設共用)의 4종으로 구분해 1921년까지 유지하였다. 1922년에는 새로 2호전용(2戶專用)이 신설되어 5개의 업종으로 늘어났고, 1924년에는 공설공용이 조합용(組合用)과 특정용(特定用)으로 구분, 급수종별은 7종으로 늘어났다. 이후 1932년의 개정된 급수조례에는 급수종별이 다시 4종으로 줄어들었다.

1932년 급수조례의 내용을 보면 급수사용자는 자기의 집 대문이나 기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지(標識)를 걸어 놓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과 구별되도록 하였다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한편, 급수종별 가운데 전용급수(專用給水)는 다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 각각 종별에

해당하는 업종을 세분화해 제시하였다.

위의 급수조례 제23조에는 사설공용전(私設共用栓)과 공설공용전(公設共用栓)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전자는 ‘임대가격이 월 25원 미만 또는 건평이 49.6㎡ 미만의 가옥에 거주하는 자’이며, 공설공용전은 ‘임대가격이 월 15원 미만 또는 건평 33㎡ 미만의 가옥에 해당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다. 당시, 급수량 검사는 양수기를 이용하며, 양수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부윤이 인정하는 수량(水量)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고, 부윤은 양수기를 점검한 후에 검사증(檢査證)을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수도 급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물론 일본인 거주자들이다. 일제가 강점기 초기부터 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위생상태를 걱정하여 내려진 조치로, 서울시내 곳곳에 방화수조(防火水槽)와 정호(井戸) 및 방화수 저장을 위한 수영장(水泳場)을 건설한 것도 대다수 한국인들의 급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28년 영등포읍의 수도공급 상황을 정리한 통계를 보면 총 급수전(給水栓) 101전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총 호수 205호 중에 한국인 이용자는 단 39호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약 80% 이상을 일본인들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는 곧 일제강점기의 모든 수도설비 및 급수가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나아가 전쟁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행하여졌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3절 광복이후 수도관련법제와 급수제도

광복 이후 서울상수도는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복공간의 혼란기와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인구의 도시 집중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수도는 기존 시설로서는 절대 공급량마저 부족, 급수난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상수도 확장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생산 및 급수시설의 확장 및 신설 등 설비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이와 함께 운영체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통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공포, 시행이 뒤따랐다.

194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4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1922년 3월 31일 경성부조례 제12호로 제정·공포된 ‘경성부수도급수조례’는 폐지되었다.

이 때 새로이 제정된 급수조례는 일제강점기 때의 급수조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수종별에 따른 업종의 구분이며, 경성부조례에서는 이들 업종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포함시켰지만, 서울시의 조례는 기본적인 골격만을 공포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시

행규칙을 만들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제정·공포하였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는 이후 1951년 11월 23일(조례 제12호)과 1953년 1월 6일(조례 제20호), 1954년 5월 15일(조례 제51호), 1955년 1월 19일(조례 제59호), 1956년 7월 10일(조례 제91호) 및 1957년 2월 1일(조례 제118호), 1960년 1월 1일(조례 제171호), 1961년 5월 10일(조례 제202호), 1961년 9월 21일(조례 제212호), 1962년 6월 11



수도시설을 방문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1년)

일(조례 제235호) 등 모두 10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1968년 8월 1일 큰 패러다임이 변화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조례 제549호)로 전면 개정될 때까지 이 조례는 급수에 관한 제반사항의 제도적 규정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적용된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가 10여 차례나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급수종별에 따르는 기본요금의 변화와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화를 다룬 제4장 사용료 항목의 급수요금 때문이었다.

1949년의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가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같은 날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이 규칙은 1951년 11월 23일(고시 제52호), 1953년 1월 6일(고시 제4호), 1954년 5월 15일(고시 제46호)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규칙을 보면 일차적으로 급수종별에 관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는데 1954년 5월 15일(고시 제46호)의 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용급수는 사설공용급수와 공설공용급수로 나누며, 사설공용급수는 ‘한 개의 사설공용전(栓)으로 2호 이상 사용하는 것’, 공설공용급수는 ‘공설공용전(栓)으로 5호 이상 또는 특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전용급수는 가사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영업용은 다시 직종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제3장 급수 부분을 보면 급수의 계량은 양수기로 하고, 급수용구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관을 절단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외곽지역에 대한 급수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급수하도록 하였다. 또, 급수에 관한 각종 위반사항을 일으켰을 경우 급수를 취소하거나 30일 이상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9호로 ‘수도법(水道法)’을 제정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도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수도법은 기존의

법령을 정리하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수도상수보호규칙(水道上水保護規則)’과 ‘수도에 관한 건’을 폐지하면서 이 법령의 내용을 흡수, 보완한 것이다. 수도법은 1961년 제정 이래 2007년 1월 기준으로 2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수도법’은 법률 제8976호로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장 전용수도,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6장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법시행령은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3월 10일 각령(閣令) 제514호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2008년 6월 20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0846호로 총 6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법시행규칙 역시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2008년 6월 27일 개정된 환경부령 제291호로 3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에 수도비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로는 1953년 5월 8일에 제23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수도비특별회계제1회전재복구공채조례’ 및 1957년 2월 8일 제12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수도비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이 있다.

한편, 수도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조례’는 1957년 6월 10일 서울시조례 제133호로 제정되었고 1963년 10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가 제314호로 제정되었다.

4절 급수조례의 정비와 1970년대 급수제도

광복이후 1949년 7월 1일에 조례 제4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는 1968년 8월 1일 조례 제549호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가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약 20여년간 급수제도의 근본으로 역할을 다하였다.

1968년에 공포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조례 제549호)는 기존의 것과 비교해 현대적 감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한 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급수제도의 기본골격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 조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정 없이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삭제되어 꾸준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왔다.

이 새로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특히 주목해 볼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 부분을 보면, 급수장치에 대한 정의를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배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된 건물을 ‘급수용구(給水用具)’로 정의하였던 것이 ‘급수장치’로 바뀐 것이다. 그

이외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급수공사, 급수사용 등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특수가압시설이다. 제1장 총칙의 제2조 3항을 보면, ‘특수가압시설’에 대해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이라 정의하였는데, 국가의 주도로 시설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자신들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



수도국장이 주재한 수도국 산하 회의장면(1970년대)

행규칙’에 의하면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시설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있으며 허가를 얻은 후 실제적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감독권 역시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68년 조례 제54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이전의 급수조례와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급수조례는, 급수에 관한 제반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전용급수와 공용급수, 소화용급수로 급수의 분류를 하였다.

이 조례는 1968년 8월 1일 제정되어 1970년 7월 10일 제624호와 15일 제627호, 12월 31일 제683호 등 1970년에 3회 및 1972년 4월 14일 제701호, 1974년 4월 1일 제826호, 7월 27일 제866호 및 11월 29일 제896호, 1975년 1월 27일 제918호, 1976년 2월 10일 제1017호, 1977년 3월 15일 제1152호와 3월 29일 제1157호 그리고 1979년 4월 30일 제1331호 등 70년대 모두 1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급수종별구분의 변화를 보면 1975년까지는 가사용·업무용(제1종·제2종)·목욕탕(갑·을)·공설공용·특수용·시설소화전·일시급수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1976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57호에 의해 급수종별구분이 8개의 종으로 세분화되었다.

한편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업용수급수조례’가 1969년 3월 24일 조례 제508호로 규정되었는데 이후 같은 해 6월 6일에는 건설부령(建設部令) 제78호로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발효되었다. 이후 이 조례는 1970년 8월 7일(조례 635호)과 1973년 12월 13일(조례 제808호)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며, 1976년 7월 13일에는 조례 제1056호로 전면개정을 하였다.

그 후 이 조례는 1977년 4월 14일(조례 제1161호)의 개정을 거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한차례씩 개정되었다. 1977년 4월 14일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하고,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

은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상수도 확장사업비 충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1년 2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제2회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였고 1978년 12월 19일에는 다시 서울시조례 제1292호로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가 제정되었다. 1971년 8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가 제정되었다.

〈표6-1〉은 광복 후 1979년까지 제정된 서울상수도 관련 규칙 및 규정 등 법제이다.

표 6-1. 서울상수도 관련 규칙 및 규정

(1945~1979)			
법제명	근거	제정일자(폐지)	내용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고시 제52호	1949. 7. 1	공용급수의 구분, 급수용구의 위치, 설계수수료 징수액 등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시공업 단속규칙	규칙 제20호	1953. 5. 4 (1968. 9. 4)	수도시공에 관한 신고사항 및 수도기술자검정시험 등에 대해 규정
서울특별시수도비특별회계 제1회전재복구공채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22호	1953. 5. 6	공채정리에 관해 준비해야 할 부책(簿冊) 등 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시설 가압시설설치및운영규칙	규칙 제139호	1957. 11. 25	양수기의 설치, 운영회규약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수도급수 사용료부과징수규칙	규칙 제194호	1960. 11. 15 (1962. 2. 20)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수도 자문위원회규칙	규칙 제199호	1961. 3. 18 (1965. 9. 13)	위원회구성 및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직제규칙	규칙 제204호	1961. 7. 7 (1975. 1. 27)	수도사업소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신촌보조수원지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241호	1962. 3. 19 (1967. 6. 23)	관장사무 및 사무분담 등 규정
서울특별시미아리보조수원지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244호	1962. 3. 20 (1967. 6. 23)	관장사무 및 사무분담 등 규정
서울특별시보광동수원지공사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311호	1962. 12. 31 (1967. 12. 29)	직무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불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346호	1963. 8. 22 (1967. 6. 23)	관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조례시행규칙	규칙 제359호	1963.12. 19	회계의 원칙 및 자산의 구분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규칙 제411호	1964. 4. 30 (1989. 11. 17)	직인의 비치, 규격 및 등록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원지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511호	1965. 11. 23 (1977. 1. 14)	수원지사무소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배수지 사무소직제규칙	규칙 제513호	1965. 11. 23 (1977. 1. 14)	배수지사무소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탁급수공사 입찰참가자자격규정	규칙 제517호	1965. 12. 22	급수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

표 6-1. 서울상수도 관련 규칙 및 규정

(1945~1979)			
법제명	근거	제정일자(폐지)	내용
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업 운영규칙	규칙 제748호	1968. 9. 4	상수도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제1회상수도 확장사업지방채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038호	1970. 7. 21	시공채 소화방법, 소화업무 등의 감독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제2회상수도 확장사업지방채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136호	1971. 2. 27	공채의 매출방법, 매출업무의 감독 등을 규 정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칙	규칙 제1346호	1974. 3. 14	‘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운영관리규칙’으로 제정됐으며 입주자 선정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관리 사업소직제규칙	규칙 제1442호	1975. 1. 27 (1977. 1. 14)	정원 및 사무분장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사무분장규칙	규칙 제1662호	1977. 1. 14	각 사업소별 사무분장 등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관한규칙	규칙 제1745호	1978. 5. 17 (1989. 11. 17)	징수관, 경리관 등 관계공무원 지정과 직무 위임사항 등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 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784호	1978. 12. 29	공채의 조제 등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급수 사용료과장사무처리규정	훈령 제106호	1962. 2. 20 (1975. 1. 23)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조례시행규정	훈령 제175호	1964. 2. 29	수도사업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재고통제규정	훈령 제188호	1965. 3. 3 (1989. 11. 14)	수도사업에 필요한 자재수급계획 등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제241호	1967. 9. 1	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간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 사무처리규정	훈령 제396호	1975. 1. 23	급수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과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 회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	훈령 제430호	1975. 9. 9	과징제도 발전 등에 공헌한 공무원 및 일반 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 행정실적심사규정	훈령 제463호	1976. 12. 1	상수도행정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 취급요령	예규 제70호	1965. 11. 30	급수공사 사무취급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

5절 안정적 성장기의 수도법제와 급수제도

1981년 8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1528호에 의해 신규급수공사에 관한 집중적 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상수도급수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과거의 경우 급수공사비를 실비정산제(實費整算制)로 납부 처리하였지만 이를 정액제(定額制)로 개정한 것이다.

정액공사비의 산출방법은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 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및 자재검사와 준공검사, 설계수수료가 포함된 제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행정절차상의 복잡함이 한결 간소화되었고, 각 수요가(需要家)의 공사비불균등으로 야기되었던 민원문제가 해소되었다. 또, 차후 지역별 계획급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때의 개정으로 많은 행정적 권한이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즉 급수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과 공용급수전의 설치허가,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 양수기시험에 관한 사항, 공용급수전의 관리인 지정권한, 급수중지 및 폐전(廢栓), 급수사용료와 급수관손료 및 가압료의 징수, 급수사용량의 계량조정, 임시급수 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 신고 및 급수중단 처분권, 징수처분,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결정 등으로 대폭적인 권한 위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16호가 공포되어 행정적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은 물론 부정급수 사용에 대한 과태료 징수와 부정급수 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현실화하여 수도요금의 재원(財源)을 마련하였다.

1983년 5월 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1771호에서는 급수공사비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제29조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에서 ‘시장은 무허가건물 양성화 지역 내의 기존 연건평 33㎡ 미만의 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집단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급수종별 구분표의 제3종란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부과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1988년 8월 2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368호를 보면 급수종별구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과거 제4종에 해당하던 가족탕이 제1종으로 변경되었고, 제1종에 새로이 헬스클럽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제2종의 규정가운데 1981년의 조례개정으로 삽입하였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제3종에 연탄소매업소와 연초소매소, 양곡소매소, 신문보급소와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와 10㎡ 미만의 업소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4종의 규정은 ‘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장 등 특수목욕장에 대한 급수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특수수영장에 대한 급수’로 변경하였다. 1989년 6월 2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448호를 보면 급수장치 개량에 대한 공사비 부담관계 조항이 변경되었다.



수도요금 전산 입력

2008년부터는 PDA로 현장에서 검침 후 전산 입력 처리되고 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재정비된 1989년 11월 16일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26호 개정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먼저 구청장의 권한이 일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었다. 따라서 수도에 관계된 제반업무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다. 또, 실무적인 사안은 대부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며 수도사업소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때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 공사비의 징수·환불 및 분할납부 결정, 시설분담금의 징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양수기의 실험 및 소방연습용 급수사용료의 징수, 급수중지 및 폐전, 양수기 수리비용 및 양수기의 대금, 급수장치 등의 검사, 급수장치의 철거 등 약 17가지의 권한이 위임되었다.

두 번째는, 급수사용자들의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즉, 수도요금 및 각종 징수료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여기에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된 사실에 불복할 경우나 기한 내에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이 만들었다. 이는 대민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급수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 조치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는 1980년 2월 2일 조례 제1398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는데 공업용수 사용료에 대한 산정방식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1989년 11월 3일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상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이후 제2544호와 제2607호, 제2627호를 통해 공무원 정원 조정 등이 개정되었다.

1989년 11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1990년대 급수조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발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급수제공을 받는 수혜자인 서울시민 위주의 행정정책을 떠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급수업종별 구분의 변화 또한, 사회의 다변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각종 신규업종이 나타남에 따라 수시로 세부적인 업종구분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1990년 2월 1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76호의 주요내용은 급수종별 구분의 소규모적인 변경에 대한 것이었으며 1992년 7월 22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2944호)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 보전하고, 급수업종 및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함’이라는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1992년 9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958호에 의거, 수도요금 산정에 관한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때 급수종별 구분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1994년에는 총 세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제3058호로 개정된 1월 10일자 개정안은 급수사용료의 요율과 급수관손료, 시설분담금 및 급수업종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양수기의 명칭을 수도계량기로 교체하였다. 제3128호로 개정된 10월 31일자 안은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구청장 명의 발행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1995년 3월 20일자 제3168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제8조 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과 제10조 정액제 공사비 및 실시지역의 고시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1996년의 개정은 제3262호로 개정된 1월 15일자의 개정과 10월 5일자 제3337호가 있었다. 1997년 9월 30일에는 제3427호를 통해 제명변경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서울특별시수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1998년 4월 6일, 10월 10일 및 1999년 1월 15일에 잇달아 개정하였다.

이후 1999년 7월 31일, 제3656호로 전문개정을 단행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는 현재의 모습을 갖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급수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원수의 수질검사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5일 ‘상수원관리규칙’이 국무총리령(國務總理令) 제413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날 수도 및 급수장치의 소독과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건설부령 제521호 및 보건사회부령 제898호로 제정하였으며 1994년 9월 13일에는 국무총리령 제463호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199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와 199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다. <표6-2>는 1980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제정된 서울상수도 관련 규칙 및 규정 등 법제이다.

표 6-2. 서울상수도 관련 규칙 및 규정

(1980~2000)			
법제명	근거	제정일자(폐지)	내용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제2300호	1989. 11. 3 (1991. 7. 6)	본부 및 각 사업소의 조직과 사무분장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직인 규칙	규칙 제2312호	1989. 11. 16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14호	1989. 11. 16	회계 및 재산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을 목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제 규칙	규칙 제2390호	1991. 7. 6	본부 및 하부기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및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시행 규칙	규칙 제2622호	1994. 6. 25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산정 등 비용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고통제 규정	훈령 제686호	1989. 11. 14	사업에 필요한 자재수급계획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위임전결 규정	상수도사업본부 훈령 제1호	1990. 2. 15	사업의 전결방법, 책임 등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상수도사업본부 훈령 제2호	1990. 3. 10	조직 및 직무, 심의사항 등에 대한 규정

6절 전환기의 수도조례의 변천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서울상수도는 미래지향적 수도행정을 통해 더욱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는 2007년 7월 30일 개정까지 모두 열두 차례 개정을 보았다.

전문개정을 본 1999년 7월 31일, 제3656호의 수도조례와 2000년 5월 20일 제3756호로 개정된 수도조례의 차이점은 제8조(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와 제9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제11조 시설분담금 부분이었다.

이후 2001년 1월 5일 제3824호로 개정된 후 다시 2001년 6월 15일 제3875호로 개정하였는데 이때에는 제36조 계량기의 점검 등 업무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히, 계량기 관련 공사의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을 일반경쟁으로 바꿔 선정의 폭을 넓게 하였다.

2001년 9월 29일 개정된 수도조례는, 제8조 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제9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제10조 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 등의 고시, 제27조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부분이 개정되었다. 특히 제27조의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범위에 대해 천재지변 지역,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02년 3월 20일자 개정판인 제3988호 수도조례에는 제6장 수질검사 부분의 제36조 2항(서울특별시 감시항목), 3항(수돗물 수질검사) 및 4항(수질관리 책임자) 등을 신설해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규의 틀을 만들었다.

2002년 4월 20일에는 조례에 적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결정통보를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한 달 뒤인 5월 20일 제4010호로 개정된 수도조례는 미미한 수준의 개정이었다.

2003년 12월 30일자 제4169호로 개정된 수도조례는, 2001년 9월 29일 개정된 제27조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부분 중 네 번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수도계량기 점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보조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는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판은 사용요금에 대한 개정과 요금감면 부분의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의 범위를, 자가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로 확대하였다. 또, 수질검사의 검사 및 의뢰 부분에 보다 강화된 조항을 추가로 만들었고 제3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에서는, 미생물 분야 1만 5,000원 이상 65만원 이하, 무기물 분야 4,000원 이상 7,000원 이하, 유기물 분야 1만 3,000원 이상 1만 7,000원 이하, 소독부산물 분야 1만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 농약류 분야 1만 3,000원 이상 1만 6,000원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7년 1월 2일 개정된 수도조례는 제2조 정의에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조례의 전체 구문에서 모든 용어는 ‘급수설비’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제5장 관리 부분의 제28조를 통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과 권고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또, 제3장 급수에서 제14조의 2항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부분을 신설해 수도공사 중 역류방지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7년 5월 29일 개정된 수도조례에서는 제4장 요금 제26조의 가산금 및 독촉 부분에서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였고 매 1개월의 경과때마다 체납금의 12/1000의 증가산금을 추가로 가산하게 하였다.

2007년 7월 30일자로 개정된 제4548호 수도조례의 경우 제27조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부분에서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8년 5월 29일자로 개정된 제4639호 수도조례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가산금 및 독촉’ 부분에서 가산금 용어를 연체금 용어로 변경하여 연체금을 3/100 비율로 일할 계산, 1개월에 한하여 부과하게 했으며 증가산금 부과제도는 폐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는 시대별로 소비자들의 편의와 급수의 선진화 및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수질검사 및 설비관리에 대한 법규규정을 각 상황에 맞게 엄격히 적용해 보다 선진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세워왔다고 할 수 있다.